

#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7월 23일  
제안자 : 오지연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중복표현을 제거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법체계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중복표현 제거 및 용어 통일
  - 안 제2조제1호
  - 안 제6조제5호
  - 안 제8조제2항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통칭하며”를 “말하며”로, “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”을 “교부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효과성”을 “기대효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고해야”를 “보고하여야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모사업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<u>통칭하며</u>, 매년 일정 금액이 <u>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·도비 보조사업</u> 등은 제외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6조(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)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공모사업의 <u>효과성</u></p> <p>제8조(의회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말하며</u> ----- ----- <u>교부되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기대효과</u></p> <p>제8조(의회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 
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 
한다.

-----  
보고하여야 -----  
-----.